

세무회계저널
제6권 제2호 2005년 6월 pp.7~38
한국세무학회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영*

〈요 약〉

해외투자의 비중이 증대된 작금에 있어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모순없이 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 개인에 대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과 내국법인의 경우 규정은 존재하나 그 중립성이 불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에 대한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인정과 내국법인의 간접세액공제 적용범위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동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내지 과세권의 침해에도 대처하여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외원천소득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 묶음별로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소위 cross-crediting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외국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그 공제를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세권의 침해에 대비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국외원천손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어떻게 운용하여야 세수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간접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연도별 적용법을 풀링법으로 변경할 것과 간접세액공제를 이용가능한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충할 것을 제시하였고, 공제적격 외국세액 여부의 판단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 바, 소액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비용·효익의 관점상 별도의 절차없이 전액 공제를 허용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할 것과 외국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한도초과액의 5년간 이월공제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세액공제제도, 조세의 중립성, 간접세액공제제도, 간주세액공제제도

* 화인경영회계법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kkim5@alumni.law.upenn.edu, 011-711-6696

I. 서 론

국제조세에 있어 국제적 이중과세(international double taxation)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가 소득세¹⁾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당사국들이 각각 과세권(taxing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과세권이 경합되는 경우를 말한다(Gustafson 2001, 254). 이는 한 나라가 자국의 거주자들에 대해 그들의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을 기초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조세원칙과²⁾ 한 나라는 자국의 영토 안에서 외국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조세원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시에 적용될 때 발생하게 된다.³⁾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국제거래는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조세의 기본원칙인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받게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방법들은 크게 쌍방적 접근(bilateral approach)과 일방적 접근(unilateral approach)으로 대별된다.

쌍방적 접근법이란 양 당사국들이 조세조약(tax treaty)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⁴⁾ 조세조약을 통하여 자국민이 조약 상대방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조약 상대방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중과세의 완화는 조약 체결국끼리 서로 상대방국가의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감소 또는 제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어서 설명할 일방적 접근법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일방적 접근법은 원천지국(source country)과 거주지국(resident country) 중 일방이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해 일정세액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조세의 영역에 있어서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우선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납세

-
- 1)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바, 법인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하에서 소득세라 함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2) 드물게는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권자(citizen)에 대해서는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흔히 국적지국과세원칙(nationality principle)이라고 불리운다.
 - 3) 따라서 이러한 중복성을 가져오지 않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고정자산세(foreign property tax)와 소비세(consumption taxes)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 4) 헌법 제5조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세조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과세여부와 과세범위 등에 대해 내국세법과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과는 달리 양 계약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대상도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등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한다. 다만, 조세조약은 주로 내국세법에 의한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조세조약에서 일방 계약국에 과세권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국가의 내국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의 거주지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Joyce 2004, A-1). 거주지국의 이중과세 완화대책은 조세의 중립성(tax neutrality)을 어떠한 측면에서 강조하는가에 따라 손금산입법(deduction method), 소득면제법(exemption method), 세액공제법(credit method)으로 세분된다.

먼저 손금산입법이란 원천지국에 의해 부과된 외국세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국가적중립성(national neutrality)에 근거하고 있다(Gustafson 2001, 255). 이 접근법에 내재되어 있는 전제는 외국세액은 단지 납세자가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선택한데 따른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손금산입되는 외국세액에 자국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감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면제법이란 국외원천소득⁵⁾을 과세대상에서 면제시키는 방법으로 조세의 자본수입 중립성(capital-import neutrality)에 근거한다(Gustafson 2001, 255).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단지 원천지국만이 과세를 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본수입중립성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거주지국의 거주자들이 원천지국에서 경쟁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한 세액공제법에 비해 보다 단순하다는 장점 때문에 소득면제법이 국제 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득면제법하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의 원천을 저세율 과세국가로 변경하고,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설립된 자회사에 인위적으로 낮은 이전가격으로 재화와 용역을 매도함으로써 소득을 이전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법이란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의 세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capital-export neutrality)에 근거한다(Gustafson 2001, 255). 이 방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방법으로, 자본수출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의 원천이 국내이든 국외이든 총 세액이 동일하므로 자국과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본수출중립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세액이 자국세율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때에도 전액 공제하여 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의 일부까지도 외국세액에 의하여 공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납세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동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율로 계산된 세액의 중복부분이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세율로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까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에서 공제하자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국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5) 국외원천소득이란 한 나라의 영토 밖에서 행해진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여러 방법 중 쌍방적 접근법인 조세조약과 일방적 접근법 중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에 근거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⁶⁾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탓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토대가 되고 있는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을 온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과 동 제도의 남용에 대한 대처규정이 미흡하여 부당한 과세권의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적용상 미비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연혁 및 현행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그 개선방안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 후 제Ⅳ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괄

1.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가 1971년에 처음 이 제도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직접외국세액공제제도만 허용하였으나 1986년 개정에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를 추가하였고, 1994년도에는 이월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5년에는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외국세액공제제도의 큰 틀을 완성하였다.⁷⁾ 그 개정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및 개정과정

연 도	내 용
1971.12.31	외국세액공제제도 신설 - 직접공제제도 - 한도액 계산 - 공제시기 및 절차 - 공제대상 외국세액의 범위 - 국별공제 혹은 일괄공제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적용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규통칙과 기본통칙에 의존
1986.12.26	세액공제와 손금산입중 선택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

6) 현행 규정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택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손금산입법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세액공제가 손금산입에 비해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액공제법을 선택한다고 볼 때, 주된 이중과세 완화방법은 세액공제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7) 직접공제제도, 간접공제제도 및 간주공제제도의 정의 및 설명은 '2. 나.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유형'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연 도	내 용
1994.12.22	이월공제제도(5년) 도입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액계산방법과 국별한도액계산방법 중 선택가능 도입
1995.12.29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
1998.12.28	기존의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법인세법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57조에서 규정
2001.12.31	제57조 제1항 제1호중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으로 수정

2.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

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용가능자 및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액 또는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세액을 세액 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따라서 외국세액공제를 선택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이 제도의 이용가능자가 된다.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능요건은 해당 세액이⁹⁾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물품세(excise tax), 판매세(sales tax), 거래세(turnover tax), 관세(custom duties)등과 같은 기타의 외국세액은 소득에 대해 과세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더불어 별금적인 성격이 강한 가산세, 가산금등도 공제가능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⁰⁾

한편, 법인세법 제57조와 소득세법 제57조에 의하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공제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납부한 세액 이외에 납부할 세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존재로만 족한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을 요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서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

8)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도 외국세액공제를 이용가능하다.

9)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이 이에 해당함.

10) 법인세 기본통칙 3-2-9...24의 3

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문종국 1996, 109).

나.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유형

외국세액공제제도는 이론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인정해 주는 직접공제제도(direct credit system)와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인정해 주는 간접공제제도(indirect credit system), 그리고 실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외국정부로부터 감면 받은 경우 이 감면분에 대해 공제를 인정해 주는 간주공제제도(sparing credit system)로 세분된다.

이처럼 외국세액공제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바, 이 중 직접공제제도는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유형이고 나머지 두 가지의 채택여부는 각국이 처한 환경과 조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어떠한 관점에서 정립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3가지 유형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

(1) 직접공제제도

직접공제제도를 이용가능한 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직접공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내국법인이 해외에 지점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지점이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은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직접공제제도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외국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도 직접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접공제제도

간접공제제도의 인정취지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할 때, 지점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제제도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받는 반면, 자회사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이 외국세액을 납부한 것이 되므로 직접공제제도에 의하여서는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기에 양자 간의 차별성이 대두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노준화 1998). 즉,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의 원천이 된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간접세액공제제도는 소위 gross-u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¹⁾ 이 방식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지사로 사업을 영위하든 아니면 자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든 유사한 세액공제효과를 주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식이다. 즉, 간접세액공제액 만큼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해당 법인이 과세되기 전의 소득으로 환원시키고, 이를 기초

11)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5조 제2항 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8항

로 산출된 세액에서 간접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지사에 대한 직접공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간접외국세액은 다음의 <식 1>에 의하여 구한다.¹²⁾

$$\text{간접외국세액} = \frac{\text{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text{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1} \quad \text{<식 1>}$$

간접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에서 간접세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우리나라가 체결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배당금의 분배를 받았을지라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회사¹³⁾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식 1>을 이용하여 구한 간접외국세액의 50%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때에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액공제되는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본래의 법인세법 규정과 동일하다.

(3) 간주공제제도

개발도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시켜 주는 경우가 많다.¹⁵⁾ 하지만 투자자의 거주국에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허용하더라도 직접 및 간접 공제제도만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세감면 및 면제로 인한 투자자의 투자유인은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부여한 조세혜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유인이 상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자본수출국)들에 대해 자신들이 투자자에게 준 조세감면 혹은 면제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1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15) 이를 tax holiday라고 말한다.

로 간주하여 외국세액공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해외에서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것에 대해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간주공제제도이다. 이에 대해 많은 선진국들은 자신의 조세제도안에 간주공제제도를 수용하거나 혹은 조세조약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주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¹⁶⁾ 주의할 점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인근 2002, 283).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한다고 할 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 줄 것인지 여부이다. 한도여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자국의 세율이 외국세액이 납부된 나라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대두된다. 자국의 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모두가 공제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국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납부된 외국세액에 대해 제한없이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자국의 세율을 초과한 부분만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으므로, 결국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외국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와 거주지국 과세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공제한도를 두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세액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현행 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제한도액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세 법	공 제 한 도 액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1호 ¹⁷⁾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1호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종합소득금액}}$

16)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17)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과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한도를 두어 인정을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외국납부세액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였을 때 각 국가별로 한도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하여 모든 국가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한도를 산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를 각각 국별한도제(per-country limitation), 일괄한도제(overall limitation)라 칭한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의 평균화효과¹⁸⁾의 인정여부이다. 즉, 일괄한도제는 모든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을 하나로 합하여 한도를 계산하므로 자국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한도초과액을 자국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한도미달분만큼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율의 평균화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별한도제는 각 나라별로 공제한도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세율의 평균화효과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율의 평균화효과가 인정되는 일괄한도제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행 세법하에서는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

라.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또는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III.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1. 자본수출중립성 관점에서 본 간접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 토대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서론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중립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추구하는가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기 달라지게 된다. 자본수출중립성

같다.

$$\text{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비율}}{\text{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18) 이의 정확한 영어용어는 cross-crediting이나 여기서는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세율의 평균화 효과라고 칭하기로 한다.

은 거주자가 해외와 국내 중 어디에 투자하든 한계소득세율(marginal rate of income taxation)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본다. 경제학자들은 투자처가 소득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자본수출중립성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원천지국은 그들의 영토안에서 영위되는 외국인의 사업활동에 대해 과세하지 말고 단지 거주지국만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그래야만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해외에 투자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국내에 투자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동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본수출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외국세액공제제도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자본수출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세정책상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비용공제, 소득면제, 세액공제 중 어느 방안이 가장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많은 이견(異見)들이 있다(Graetz 2001). 하지만 조세의 중립성이 어떠한 관점에서 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별론으로 하고, 현행 세법에서 채택한 외국세액공제제도가 과연 고유한 과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수출중립성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자본수출중립성 관점에서 본 현행 간접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1) 개인에 대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달성 여부

미국에서 간접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던 이유를 조세가 투자장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접세액공제 규정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하는 미국세법¹⁹⁾ 제243조의 대응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세법 제243조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세액공제가 미국세법 제243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고 본다면 미국의 간접세액공제가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되고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간접세액공제가 내국법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배당에 관한 조세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배당에 관한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기업단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이 과세된 이익이 개인주주에게 분배되는 경우 다시 한번 개인주주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소위 2단계 시스템(two-tier system)으로, 기업과 개인주주 전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19) Internal Revenue Code; IRC

있다. 하지만 기업이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즉,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과 개인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삼중과세(triple taxation)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기업간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기업단계에 있어서는 한번의 과세에 그친다는 입장(single corporate-level tax)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주주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 배당은 소득에서 면제하여 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업간 배당에 대한 소득면제비율은 다음 <표 3>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3> 기업간 배당에 대한 소득면제비율

지분비율	소득면제비율
20% 미만	70%
20% 이상 80% 미만	80%
80% 이상 ²⁰⁾	100%

출처 : Hoffman, William H., William A. Raabe, James E. Smith, and David M. Maloney,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 Trusts*, Thomson, 2003, p.2-17

이처럼 기업간 배당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이유는 동일한 경제활동에 대해 여러 번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조세시스템에서 명심하여야 할 점은 개인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기업단계에서의 과세와는 전혀 별개로 비록 동일한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²¹⁾ 즉, 현행 미국의 세법규정에 의하면 배당에 관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법인간의 배당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개인의 배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별도의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간접세액공제가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내국법인주주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은 일응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배당에 관한 우리나라의 조세시스템은 미국과 달리 1단계 시스템(one-tier system)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주주가 받은 배당과 더불어 개인주주가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의 관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처럼 간접세액공제를 법인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배당에 관한 조세시스템을 미국과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20)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을 수령하는 법인과 affiliated group이어야 한다.

21) 이는 임금 등 기타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22)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법인세법 제16조 8호, 법인세법 제18조의 2, 3

〈표 4〉 미국과 한국의 배당관련 조세체계 비교

	투 자 대 상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미 국	한 국	미 국	한 국
개인주주	N/A	배당세액공제	N/A	N/A
법인주주	배당의 익금불산입	배당의 익금불산입	간접세액공제	간접세액공제

<표 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에게 투자하여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통하여 국내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있고,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세의 자본수출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한편, <표 4>에서 보면 개인주주가 내국법인에게 투자하여 배당을 지급받고 이 배당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한 내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개인주주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하지만 배당세액공제는 명시적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아무런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주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환경이라 가정할 때 개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세후수익율을 가져 올 것이다. 이는 결국 개인에 대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조세시스템과 한국의 조세시스템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간접세액공제를 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규정이 과연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측면에서 합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조세가 투자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자본수출중립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주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고 이는 간접세액공제를 개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내국법인에 대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달성 여부

간접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간접세액공제 규정이 자본수출중립성 관점에서 볼 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이다.²⁴⁾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2001. 1. 1.

23) 물론 이 양자 간의 효과가 동일하여 자본수출중립성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상술하기로 한다.

24) 간접세액공제방법이 비록 그 형태는 세액공제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제받은 세액과 연관된 배당액이 그만큼 익금불산입 되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규정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수입배당금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²⁵⁾ 익금불산입대상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비율을 곱하여 얻어지는데 여기서 익금불산입비율은 다음 <표5>와 같다.

<표 5> 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100%	100%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50% 초과	50%
	50% 이하	30%

반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²⁶⁾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간접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따라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을 비교하여 볼 때,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실질적으로 모두 비과세되는데 비하여²⁷⁾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만 비과세되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공제요건이 더 유리하다. 반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의 30%가 비과세되는데 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간접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더 유리하다. 이처럼 양자간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조세가 투자처에 영향을

25)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① 대규모기업지단소속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②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 ③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규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 ④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6) 미국의 경우 간접세액공제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 외국기업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바, 이는 단순히 포트폴리오 혹은 소극적 투자(negative investment)가 아니라 해당기업을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의 경우에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게 일반적이다. 또다른 측면으로는 1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그 이하의 지분율일 경우 외국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어렵다고 보고 관리적 측면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도 한다.

27)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간접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미쳐서는 아니된다는 자본수출 중립성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접 세액공제를 인정하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적용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남용우려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완화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동 제도를 악용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야 할 국내세액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외국세액공제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러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남용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외국세액공제제도 남용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가. 국외원천소득의 특성별 한도설정의 도입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두게 된 이유는 국내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납부된 외국세액에 대해 제한없이 공제를 허용할 경우 국내 세율을 초과한 부분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내국세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²⁸⁾ 또한

28)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자.

국외원천소득 : 100, 외국세율 : 40% 국내원천소득 : 100, 내국세율 : 30%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	한도제한이 있는 경우
총잠정세액	$60(=100 \times 30\%)$	$60(=100 \times 30\%)$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	30	30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	30	30
외국납부세액	$40(=100 \times 40\%)$	$40(=100 \times 40\%)$
외국납부세액공제	40	30
실제산출세액	$20(=60-40)$	$30(=60-30)$

원칙적으로 외국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총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은 $60(=(100+100 \times 30\%))$ 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외원천소득 100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외국세액공제제도이다. 이때 외국세액공제를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액은 60에서 외국납부세액 40을 차감한 20이 될 것이다. 이는 외국납부세액 중 우리나라 세율 초과부분인 10만큼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부과될 세액 30 $(=100 \times 30\%)$ 에서 차감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 차액 10은 외국세액공제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10만큼 감소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자국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외국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세액공제를 이용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부과된 내국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권을 외국에 양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수가 부당히 감소한다거나 과세권이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세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각 나라별로 공제한도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하여 하나의 공제한도를 설정할 것인가이다. 어떻게 공제한도를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일괄한도제를 쓰는 경우에는 세율의 평균화 효과(averagin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일괄한도제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에 납부한 외국세액과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가진 나라에 납부한 외국세액이 혼합되어 공제가능액이 국별 한도제를 쓰는 경우보다 늘어남으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일괄한도제와 국별한도제의 비교 예

Y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 from foreign country Y) : 100
Z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 from foreign country Z) : 100
Y국세율 : 46%, Z국세율 : 24%, 국내세율 : 35%

	일괄한도제			국별한도제		
	Y국	Z국	합계	Y국	Z국	합계
국외원천소득 [a]	100	100	200	100	100	200
세율 [b]	46%	24%		46%	24%	
납부세액 [c]=[a]×[b]	46	24	70	46	24	70
잠정산출세액(potential tax) [d]=[a]×35%	-	-	70	35	35	70
외국세액공제한도액 [e]=[d]×([a] / [a])	-	-	70	35	35	70
허용외국세액공제(allowable FTC)[f]=min.(c,e)	-	-	70	35	24	59
실제산출세액(actual tax)[g]=[d]-[f]	-	-	0	0	11	11

일괄한도제에 의해 허용 외국세액공제액을 구하면 70이 되어 실제산출세액이 0 이 되나, 국별한도제에 의하면 11이 된다. 따라서 일괄한도제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일괄한도제가 결국 각 나라 세율의 평균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예에서처럼 일괄한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의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보다는 낮은 세율을 가진 또 다른 외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유발된다. 즉, 고율로 과세된 외국인천소득과 저율로 과세된 외국인천소득을 섞어 세제상 이득을 보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세법상 일괄한도제의 허용으로 인한 세율의 평준화 현상으로 인해 세수감소와 자본투자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함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투자의 왜곡과 세액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괄한도제를 폐지하고 국별한도제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별한도제만을 허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과 정부의 관리측면에서 증가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별한도제만을 강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일괄한도제만을 인정하거나 국별한도제와 일괄한도제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괄한도제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대처방안을 찾아야 하는 바, 그러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천소득을 일정한 묶음(basket)으로 나누어 외국세액공제제한도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나라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의 대안으로 소득을 특성별로 나누어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세율의 평준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을 9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외국세액공제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²⁹⁾, 이로 인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상 복잡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비용-효익 원칙에 따라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고 적절한 묶음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을 배당, 이자, 임대료수입, 로열티 등의 자산소득(passive income)과 그 이외의 일반소득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자산소득을 별도의 묶음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세액이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과 일반적인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소득간의 현격한 세율차이로 인한 심각한 세율의 평균화 현상이 일어날 여지가 크다. 자산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고율로 과세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자산소득의 범주에서 분리해 낼 것인가이다. 즉, 자산소득을 별도로 분리한 근본적인 이유가 일반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하나의 묶음속에 두었을 때

29) 9개의 묶음(basket)은 다음과 같다. (I.R.C. §904(d)(1))

- ① Passive income(e.g., rents, royalties, interest, dividends)
- ② Interest subject to foreign withholding taxes at rates of 5 % or more(high withholding tax interest)
- ③ Financial services income of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financing businesses
- ④ Shipping income
- ⑤ 10/50 company dividends(dividends from a foreign corporation owned 10%~50%)
- ⑥ DISC(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s) dividends
- ⑦ Distribution received from an FSC from earnings and profits attributable to foreign trade income
- ⑧ FSC(foreign sales corp.) distributions
- ⑨ residual/other(e.g., active business income, sales income)

발생하는 평균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율로 과세된 자산소득을 일반적인 자산소득의 묶음안에 포함시켰을 경우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세율의 평준화현상만을 위하여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자산소득을 생성해 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본다면 효익-비용원칙의 측면,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복잡성 증대 방지 측면 등에서 자산소득의 묶음안에 포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소득을 각 특성별로 분류하여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산정하게 되면 현행 규정과 비교하여 부당한 세수감소의 방지효과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소득의 특성별 분류에 의한 공제한도액의 설정 효과 예

한국기업이 외국 A에서 제조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 : 100
A국의 세율 : 50%
한국기업이 외국 B에서 벌어들인 자산소득 : 100
B국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 0%
우리나라의 세율 : 30%

	현행 규정	개정안		
		자산소득	일반소득	합계
소득금액[a]	200	100	100	200
잠정세액[b]=[a]×30%	60	30	30	60
외국세액공제한도액[c]=[b]×([a] / [a])	60	30	30	60
외국납부세액[d]	50	0	50	50
외국세액공제가능액[e]=min.(c, d)	50	0	30	30
산출세액[f]=[b] - [e]	10	30	0	30
한도초과액[g]=[d] - [c] ³¹⁾	0	0	20	20

<표 7>에서 보듯 소득별 특성에 따라 묶음을 나누어 공제한도액을 설정하게 되면 최종세액은 30(=60-30)이 되고 공제한도 초과액 20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상쇄되지 않고 보호된다. 한편, 소득을 묶음으로 나누어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시에도 묶음별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30)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묶음으로 분리하여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I.R.C. §904(d)(2)(A)(iii)(III); §904(d)(1)(B) 참조

31) 마이너스는 제로로 본다.

나.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의 인위적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오로지 조세효과만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허점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가는 재고해 볼 문제이다. 조세효과만을 위해 행해지는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불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세액공제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는 크게 두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외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등의 자산 취득을 통하여 미지급 외국세액의 이전을 도모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의 조세법상 차이를 이용하여 중복의 조세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³²⁾

[예 1] 2004.6.29에 내국기업이 곧 소멸할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75에 국외에서 구입하였고, 이 저작권과 관련되어 기대되는 유일한 수익은 2004.6.30에 수령할 로알티가 전부이다. 로알티의 총 금액은 100이고 이에 대해 해당 외국에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자. 따라서 내국기업에게 저작권과 관련하여 손실 5와 30의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다. 결국 내국기업은 경제적 손실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통하여 30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예 2] 내국기업 D가 외국기업 F를 X국에 설립하면서 10을 출자하고 F의 보통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F는 X국의 개인투자자로부터 90을 7.5%에 차입한 후, 모두 100의 자금으로 10%의 수익율이 기대되는 이자부 금융상품(interest-bearing financial instrument)을 구입하거나 또는 D에게 10%의 이자율로 대여한다. 이 예에서의 중요한 점은 내국세법과 X국의 세법이 이 거래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이다. 먼저 X국이 개인투자자의 대출금을 지분투자자로 보아 F의 지급이자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X국의 세율이 30%라고 할 때 F는 매년 $3(10 \times 30\%)$ 의 세액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X국이 배당을 익금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면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개인의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된다. 한편 내국세법이 F가 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공제가능하다고 본다면 F가 D에게 매년 $0.25(= 10 - (90 \times 7.5\%) - 3)$ 의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D가 0.25의 이익을 얻고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국기업 F가 내국세법과 X국의 세법간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공제가능 외국납부세액을 창출해 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예를 살펴보면 공제가능한 외국납부세액에 비하여 창출한 소득이 미미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합리적인 경우라면 행하지 않을 거래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얻기 위하여 행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이는 주된 목적이 조세효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거래행위가 경

32) 아래의 예들은 1998년에 발표된 미국 IRS Notice 98-5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조세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동 제도의 남용을 막는 길이 된다.³³⁾

다. 국외원천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외국세액공제한도조정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남용우려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국외원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외국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외원천손실은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게 되어 국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때 국외원천손실이 우선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먼저 감소시킨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외국세액공제액이 달라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내의 세수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표 8>에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표 8> 국외원천손실이 국내원천소득을 우선적으로 감소시킨다고 가정하는 경우

	조정전	조정 후	외국세액
국내원천소득	100	0	-
국외원천소득(A)	(100)	0	0
국외원천소득(B)	200	200	60
과세표준	200	200	60

국내세율 : 30%, 국외세율 : 30%

<표 8>에서 보듯이 국내원천소득이 우선적으로 감소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외국 B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의 공제한도가 $60(=60 \times (200/200))$ 이 되고 따라서 외국세액공제액이 60이 되어 최종납부세액은 0이 된다.

반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원천손실이 다른 국외원천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외국세액공제한도가 $30(=60 \times (100/200))$ 으로 줄어들고 따라서 외국세액공제액은 30이 되어 최종납부세액은 30이 된다.

33) IRS Notice 98-5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세액공제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위 경제적 실질 검사(economic substance test)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실질 검사는 (1)거래가 조세효과를 얻는 것 이외의 사업적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2)조세효과 이외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의 존재 여부로 나누어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Notice 98-5의 입장은 다소 본래의 보통법상 경제적 실질검사와는 차이가 있다. 즉, 사업적 목적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오로지 조세효과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검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외국세액공제를 부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지나치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통법상의 경제적 실질 검사 원칙을 충실히 따라 사업적 목적 검사를 충족하면 비록 조세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외국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9〉 국외원천손실이 다른 국외원천소득을 우선적으로 감소시킨다고 가정하는 경우

	조정전	조정 후	외국세액
국내원천소득	100	100	-
국외원천소득(A)	(100)	0	0
국외원천소득(B)	200	100	60
과세표준	200	200	60

국내세율 : 30%, 국외세율 : 30%

이처럼 국외원천손실이 있는 경우 외국세액공제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은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상계된다고 보는 것이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양 방법 중 일괄한도제는 자연스럽게 국외원천손실이 다른 국외원천소득과 우선적으로 상계된 후 한도를 구하게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별공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한도제와 달리 각 국가별로 독립적인 한도를 설정하게 되므로 한 나라의 국외원천손실을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려면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³⁴⁾에서는 이에 대해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각 나라의 원천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국외원천손실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한도제와 비교할 때 결국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인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국외원천손실이 다른 국외원천소득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 되지만, 일괄한도제와 국별한도제를 불문하고 국외원천손실합계액이 다른 국외원천소득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결국 그 차액부분이 국내원천소득을 차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현행규정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특정연도에 국외원천손실이 다른 국외원천소득보다 커 궁극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차감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이후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만큼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국내원천소득이 감소됨으로 유발되었던 세액감소효과를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게 된다.

3. 간접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간접세액공제 규정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간접세액공제액의 산정방법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34)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가. 연도별적용법에 의한 간접세액의 산정 문제

현행 간접세액공제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gross-u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간접외국세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간접세액을 산출할 때는 배당액을 각 연도의 배당가능재원과 연결시켜 해당연도의 세액이 대응되도록 하는 연도별적용법(annual matching method; year-by-year method)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³⁵⁾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외국자회사로부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누적된 동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였을 때 그 배당 재원의 사용 순서는 먼저 축적된 이익이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간접외국세액 산출과 관련하여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먼저 간접외국세액의 산출식상³⁷⁾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외국의 세법규정과 우리나라의 세법규정 중 어느 규정을 이용하여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밝힌 규정은 없으나 직접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³⁸⁾상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의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³⁹⁾ 왜냐하면 간접세액공제가 자회사와 지사의 균형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본다면 직접세액공제의 기초가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도출하는 것과 대비하여 간접세액공제와 관련된 외국자회사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도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⁴⁰⁾ 이처럼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연도별적용법에 의할 경우 외국자회사에 의하여 납부된 외국세액의 일부가 국내법인의 간접세액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외국세법에 의하면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나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손금산입되어 특정연도의 외국법인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제로가 되는 경우 이 때 납부된 외국세액은 결코 간접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⁴¹⁾

한편, 외국자회사로부터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서 누적된 동 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을 수취하였을 때 그 배당 재원의 사용 순서를 먼저 축적된 이익이 먼저 배당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지사로 운영하여 직접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대비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다. 다음의 표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3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생산일자 :2004-06-01

37) 간접외국세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38)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39)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89년의 United States v. Goodyear Tire & Rubber Co. 판례에서 자국세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40)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바, 1989년의 Goodyear Tire & Rubber Co.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외국의 세법이 아닌 자국의 세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1) Champion Int'l Corp. v. Commissioner, 81 T.C. 424 (1983), acq. In resut, 1987-2 C.B. 1.

〈표 10〉 간접외국세액

	세전이익	세율	세액	세후이익	배당(50%)	선입선출에 의한 간접세액	후입선출에 의한 간접세액
01년	100	20%	20	80	40	$20 \times (40/80) = 10$	$20 \times (40/80) = 10$
02년	200	25%	50	150	75	$20 \times (40/80) = 10$ $50 \times (35/150) = 11.67$ Total : 21.67	$50 \times (75/150) = 25$
03년	300	30%	90	210	105	$50 \times (105/150) = 35$	$90 \times (105/210) = 45$
Total	600		160	440	220	66.67	80

〈표 11〉 지사로 운영하였을 경우의 직접외국세액

	직접세액(a)	50%(b)
01년	20	10
02년	50	25
03년	90	45
Total	160	80

자회사와 지사로 운영하는 것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액이 되도록 직접세액과 일치하는 쪽으로 산정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배당이 50%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직접세액의 50%인 <표 11>의 (b)열과 <표 10>의 간접세액이 근접하는 방향으로 간접세액이 산출되는 것이 합당하나, 표에서 확인하듯 선입선출에 의한 배당을 가정하면 그러하지 못하게 된다. <표 11>의 (b)열과 같이 간접세액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배당이 후입선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됨을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입선출로 가정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배당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보다 유효세율이 낮은 연도에는 배당을 유보하고 유효세율이 높은 연도에는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간접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배당을 선입선출로 가정하는 것과 후입선출로 가정하는 것 양자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데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연도별적용법 대신 풀링법(pooling method)⁴²⁾을 채택하는 것이다. 풀링법이란 여러 과세연도의 이익과 세액을 각각 누적하여 하나의 풀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지정한 특정연도의 세액을 간접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배당의 선입선출 및 후입선출 가정에 따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풀링법에 의하면 다음의 산식과 같이 간접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42) 이는 미국이 1986 Act에서 연도별적용법을 버리고 채택한 방법으로 평균유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을 반영하는 외국세액만큼을 배당에 할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식 2〉 폴링법

$$\text{간접세액 상당액} = \text{누적외국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text{누적세후이익}}$$

나. 외국자회사의 범위 문제

간접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행 규정을 해석하건대 외국자회사는 국내법인이 직접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단계(1st-tier)의 자회사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회사의 범위를 1단계로만 한정하는 것이 과연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취지상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 보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 1과 2에 대하여 모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그 운용형태만이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그림 2>의 경우에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 1과 2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모두 간접세액공제를 인정받는 반면, <그림 1>의 경우에는 외국법인1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간접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림 1〉 간접소유의 경우

〈그림 2〉 직접소유의 경우

이를 구체적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3] 직접소유의 경우

세전이익	1,000,000	1,000,000
외국세액	<u>200,000</u>	<u>200,000</u>
세후이익	800,000	800,000
배 당	800,000	800,000

외국법인1로부터의 간접외국세액 [a] : $200,000 \times (800,000/800,000) = 200,000$

외국법인2로부터의 간접외국세액 [b] : $200,000 \times (800,000/800,000) = 200,000$

총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c] : $[(800,000+200,000) + (800,000+200,000)] \times 40\%^{43)} = 800,000$

총간접외국세액[d] = [a] + [b] : 400,000

납부세액[e]=[c]-[d] : 400,000

국내법인의 세후이익 : $(800,000 + 800,000) - 400,000 = 1,200,000$

[예 4] 간접소유의 경우

세전이익	1,000,000	1,000,000
외국세액	<u>200,000</u>	<u>200,000</u>
세후이익	800,000	800,000
배당수입	<u>800,000</u>	<u>-</u>
배당가능이익	1,600,000	800,000
배 당	1,600,000	800,000

외국법인1로부터의 간접외국세액[a] : $200,000 \times (800,000/800,000) = 200,000$

총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b] : $(1,600,000 + 200,000) \times 40\% = 720,000$

납부세액[c]=[b]-[a] : 520,000

국내법인의 세후이익 : $1,600,000 - 520,000 = 1,080,000$

<예 3>과 <예 4>를 비교하여 보면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회사의 소유구조 차이로 인해 납부세액이 400,000과 520,000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차 자회사의 경우에만 간접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2차 혹은 그 이하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위의 <예 4>에서 외국법인2가

43) 국내세율을 40%로 가정

외국법인1에게 한 배당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재원으로부터 비롯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따른 불합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 5>와 같다.

[예 5] 2차 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국내법인	수입배당금	$1,600,000 + \text{gross-up } 400,000 = 2,000,000$
	산출세액	$2,000,000 \times 40\% = 800,000$
	간접세액	<u>400,000</u>
	납부세액	400,000
	세후이익	1,200,000
외국법인1로부터의 간접세액상당액 $400,000 \times (1,600,000/1,600,000) = 400,000$		
외국법인1	세전이익	$1,000,000 + 800,000 + 200,000 = 2,000,000$
	외국세액	$\frac{200,000}{800,000} + 200,000 = \frac{400,000}{1,600,000}$
	세후이익	1,600,000
	배 당	1,600,000
외국법인2로부터의 간접세액상당액 $200,000 \times (800,000 / 800,000) = 200,000$		
외국법인2	세전이익	1,000,000
	외국세액	<u>200,000</u>
	세후이익	800,000
	배 당	800,000

외국법인2가 외국법인1에게 한 배당에 대해 외국법인1에게 간접세액을 허용하게 되면 $200,000(= 200,000 \times 800,000/800,000)$ 의 간접세액이 산출되며 이는 외국법인 1의 세전 이익과 납부세액에 각각 포함될 것이다. 국내법인의 grossed-up dividend는 $2,000,000(= 1,600,000 + 400,000)$ 이 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800,000(= 2,000,000 \times 40\%)$, 간접세액공제액이 400,000이 되고 납부세액은 $400,000(= 800,000 - 400,000)$ 이 된다. 결국 세후소득은 1,200,000이 되어 외국법인1, 2를 각각 직접 소유한 <예 3>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자회사 이외에 2차 이하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조세에 의해 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자회사 소유 형태가 제약을 받게 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이때 어느 단계의 자회사까지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44) 미국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간접세액공제제도를 개정해 왔다(Bittker 2002, 72-13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허용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4. 공제적격 외국세액 판단에 관한 개선방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가능한 세액에 해당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의 조세시스템이 각기 상이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이와 관련하여 너무 간단히 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적격과 관련하여 그 지침을 명확히 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능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고찰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세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외국세액공제상의 외국세액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과연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이 우리나라 조세법상의 “세금”에 해당하는가이다.⁴⁶⁾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중과세의 완화측면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실로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⁴⁷⁾에서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정부가 부과한 금액이 과연 세액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단순명료한 일만은 아니다. 즉, 명목상으로는 조세로 부과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세적 성질과 경제적 효익에 대한 대가적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인정할지 아니면 전액 부인할지 또는 조세적 성격과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나누어 조세적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액공제를 인정할지 등과 관련된 처리지침이 필요하다. 나아가 만약 조세적 성격과 반대급부적 성격을 구분하여 조세적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이

45)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간접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 ① 각 자회사간의 소유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 ② 미국법인의 간접 소유지분은 5% 이상일 것
- ③ 4th-tier 자회사부터 6th-tier 자회사까지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할 것
- ④ 6th-tier 자회사까지만 간접세액공제를 허용

46) 현행 세법은 조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납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임승순 2003, 4).

47)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제2항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⁴⁸⁾ 결국 현행 규정이 이와 관련하여 침묵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인지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현행 세법은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여기서 소득이란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을 말한다.⁴⁹⁾ 따라서 외국정부에 의하여 어떤 명칭으로 부과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세법개념상 소득에 대한 세액에 해당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 만약 외국정부가 총소득에 기초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공제가능한 세액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1호 및 2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세액은 실현 순소득에 부과된 세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제가능한 세액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공제가능 세액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 규정은 징세의 편의상 또는 과세표준 계산의 편의상 소득에 갈음하여 총수입금액, 생산량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문종국, 1996),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제가능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순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된 세액을 소득세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에 반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즉, 총수입금액을 기초로 과세된 경우 순소득에 의해 과세된 경우보다 당연히 많은 세액이 산출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된 세액이 소득이라는 것에 부과된 세액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외국세액공제의 오용까지도 우려될 수 있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점에서 Biddle(1938) 판례⁵¹⁾ 이후 공제적격의 세액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 세법의 관점에서 보아 실현 순소득(realized net

48)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것이 로열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초기에는 이를 전액 공제가능한 세액으로 인정(Rev. Rul. 55-296)하다가 1976년의 IRS NEWS RELEASE를 통하여 납세자의 지위에 덧붙여 외국정부와 상업적 관계를 지닌 이중지위 납세자(dual capacity taxpayer)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정을 둬으로써 전액 공제가능한 세액으로 보던지 아니면 전액 공제불가능한 로열티로 보는 방식(all-or-nothing basis)을 거쳐 결국 1983년 Regulation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조세적 성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마련하였다(안경봉 1989, 10).

49)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제1항, 57-0...1

50)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순소득 판단 기준(net gain test)을 규정하고 있다(Treas. Reg. § 1.901-2(a)(3)(i)).

51) Biddle v. Commissioner, 302 U.S. 573 (1938)

gain)에 부과되어야만 한다는 기준⁵²⁾을 엄격히 요구하다가 Bank of America(1972) 판례⁵³⁾에 와서 이를 다소 완화하여 총소득에 부과된 세액의 경우에도 일정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⁵⁴⁾하다고 한 미국의 경우⁵⁵⁾ 1983년 미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⁵⁶⁾을 제정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⁷⁾

다. 조건부로 부과된 세액에 대한 공제부인규정 신설

납세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외국세액공제를 이용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외국정부가 과세한다면⁵⁸⁾ 이는 공제가능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외국세액공제를 이용가능한 경우에만 외국정부가 과세한다는 것은 결국 공제가능한 세금을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이다.⁵⁹⁾ 따라서 이와 관련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요구된다.

5. 기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가. 소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인정 간소화

외국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복잡한 세법을 적용하는데 따른 비용이 납세자와 정부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그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외국세액 이하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없이 전액 공제를 허용해 주는 규정(de minimis rule)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산출하는데 있어 외국원천소득을 일반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묶음별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전액공제를 인정해주면 될 것이다.

이는 신규 외국진출기업이나 소규모 다국적기업의 경우 외국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그 효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세액공제보다는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개인의 경우 외국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유지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⁶⁰⁾

52) 이를 "Biddle standard" 라고 한다.

53)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 Savings Ass'n v. United States, 459 F.2d 513, cert. denied, 409 U.S. 949 (1972)

54) 이를 "Bank of America Doctrine" 이라고 한다.

55)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소득에 대한 세액도 공제가능하다고 하였다.

"[A] direct income tax is creditable, even though imposed on gross income, if it is very highly likely, or was reasonably intended, always to reach some net gain in the normal circumstances in which it applies."

56) Treas. Reg. §1.901-2(a)(1)

57) 이에 따르면 외국세액의 주요한 특성으로 볼 때 미국세법상의 소득세에 해당하면 공제가능한 세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세법이 미국세법과 꼭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더불어 대체세를 인정함으로써 공제가능한 세액의 범주를 보다 확장하고 있다.

58) 이를 소위 "soak-up tax"라고 부른다.

59) 같은 이유로 미국의 경우 Treas. Reg. §1.901-2(c)에서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0) 미국의 경우 개인에 한하여 \$300 이하(부부가 같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600)의 외국납부세액이

나. 공제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의 허용

외국법인세액이 외국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그러나 지속적으로 외국세율이 우리나라세율보다 높아 공제한도초과액이 매년 발생하는 경우 5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더라도 그 한도초과액은 영구히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과 공제잉여액의 이월허용이다(박상임 1997).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대안은 각각 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월공제기간을 가령 15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매년 계속해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간의 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공제잉여액에 대한 이월허용은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본질이 국제적 이중과세의 완화에 있다고 볼 때 그 허용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즉, 공제잉여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국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인데, 이때 이중과세가 일어난 부분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이므로 이를 넘어 공제잉여액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차이부분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의 허용이다. 즉, 5년간의 이월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만약 마지막 5년차에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일괄공제(cross-crediting)의 조정을 통하여 외국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는 유인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규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소급공제에 대하여도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국가가 자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기 몇 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공제의 도입이 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⁶¹⁾

다. 간주배당금과 관련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 허용 규정의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장은 조세피난처⁶²⁾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어느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고 그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하였으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일방이 타방을 지배하는 관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 지배주주에게 귀속될 금액을 그 내국인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주배당금액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

발생하였고 동시에 외국원천소득에 소급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세액공제한도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I.R.C. §904(j)).

- 61) 미국은 공제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2년간의 소급공제와 5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5년간의 이월공제를 15년으로 늘려 이중과세를 배제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세법내의 이월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이 보통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 가령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3년의 소급공제와 1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I.R.C. §172) - 과도 연관이 있다.
- 62)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현행 세법 규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간주배당금이라는 것이 결국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가능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불허한다면 그 취급상의 불공평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바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다.

IV. 결 론

지금까지 현행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가 모순없이 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 개인에 대한 조세의 자본수출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점과 내국법인의 경우 규정은 존재하나 그 중립성이 불완전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에 대한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인정과 내국법인의 간접세액공제 적용범위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두번째로 작금의 외국투자규모 증대 등에 비추어 외국세액공제의 허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내지 과세권의 침해에도 대처하여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외원천소득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 묶음별로 외국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소위 cross-crediting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외국세액공제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행위에 대해 그 공제를 부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세권의 침해에 대비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국외원천손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어떻게 운용하여야 세수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세번째로는 간접세액공제제도의 운용상 개선을 위해 현재의 연도별 적용법을 풀링법으로 변경할 것과 간접세액공제를 이용가능한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충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네번째로 공제적격 외국세액 여부의 판단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외국세액공제제도의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 바, 소액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비용-효익의 관점상 별도의 절차없이 전액 공제를 허용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할 것과 외국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한도초과액의 5년간 이월공제제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1971년에 도입되어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른 외국세액공제제도는 비록 큰 틀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나라의 세수확보 및 과세권보호라는 측면과 자국민의 국제적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조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인 외국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앞으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인근. 2002.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주)광교.
- 노준화. 1998. “해외진출기업의 사업형태에 따른 세부담분석”. 세무회계학연구 제1권.
- 문종국. 1996. “외국세액공제제도”. 조세법연구 제2집.
- 박상임. 1997. “외국세액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9.
- 안경봉. 1989.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세액공제제도”. 세무사 7권 3호(54호).
- 임승순. 2003. 「조세법」. 박영사.
- Bittker, Boris I. and Lawrence Lokken. 2002.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Taxation*. Warren, Gorham & Lamont.
- Chorvat, Terrence. 2000. Taxing International Corporate Income Efficiently. 52 *Tax Law Review* 225.
- Coven, Glenn E. 1999. International Comity and the Foreign Tax Credit: Crediting Nonconforming Taxes. 4 *Florida Tax Review* 83.
- Graetz, Michael J. 2001. Taxing International Income: Inadequate Principles, Outdated Concepts, and Unsatisfactory Policies. 26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357.
- Gray, Stuart W. 1999. Comment: Controlling Foreign Tax Credit Abuse : The Economic Substance Test. 13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Fall) 729.
- Gustafson, Charles H., Robert J. Peroni, and Richard Crawford Pugh. 2001.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st Group.
- Hoffman, William H., William A. Raabe, James E. Smith, and David M. Maloney. 2003.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 Trusts*, Thomson.
- Joyce, Thomas B. 2004. *The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Tax Management Inc.
- Kaufman, Nancy H. 1998. Fairness and the Tax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29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145.
- Mundstock, G. 1993. Section 902 is too generous. 48 *Tax Law Review* (Winter) 281.
- Peroni, Robert J. 1997. Back to the Future: A Path to Progressive Reform of the U.S. International Income Tax Rules. 51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975.

A Study on the Reform of Foreign Tax Credit System

Ki Young Kim*

—〈Abstract〉—

In 1971, the foreign tax credit was enacted to alleviate double taxation on the foreign income of residents. Afterwards, the foreign tax credit has been revised but it still has som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stands on capital-export neutrality which economists usually regard as essential for worldwide economic efficiency, because the location of investments would be unaffected by capital income taxes, but it has some inconsistencies when it applies.

Second, although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has been subject to taxpayers' aggressive attempts to reduce income taxes and the taxpayer either effectively purchases foreign tax credits or exploits tax law inconsistencies in arrangements "where the expected economic profit is insubstantial compared to the foreign tax credits generated,"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ignores those attempts.

Third, because foreign losses will in turn decrease the overall worldwide taxable income, the unbridled claiming of foreign losses can seriously affect the maximum foreign tax credit to the taxpayer's advantage. Nevertheless, the rules which prevent these attempting don't exist.

Lastly,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has other problems when it applies.

This paper proposes the comprehensive reform of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system to heal these problems.

<Key Words> Foreign tax credit, Indirect foreign tax credit, Sparing foreign tax credit, Tax neutrality

* Fine Management & Accounting Corporation, Lecturer, Korea University